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9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구단11193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1. 1. 27.
판 결 선 고	2021. 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26. 원고의 모친인 B으로부터 [redacted]구 C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과세표준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9

을 94,454,244원으로 하여 취득세 3,305,890원, 농어촌특별세 96,860원, 지방교육세 283,360원의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9. 7. 4.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신고는 하였으나 사정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증여계약 해제에 대한 공무원의 안내가 없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19. 7. 10.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3,318,280원, 농어촌특별세 97,220원, 지방교육세 284,420원을 부과하였고, 2019. 8. 29. 원고에 대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으려고 하였으나 부과되는 증여세액이 과다한 사정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는 등 증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면 단순히 취득세 납부서의 폐기로 납세의무가 소멸한다는 취지의 잘못된 안내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담당 공무원의 위와 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9

은 잘못된 안내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별도의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60일 이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의 계약해제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 수익 ·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 ·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5. 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9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화해조서·인낙조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 포함),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4. 26. 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고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인 위 2019. 4. 26.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9.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의 계액해제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증여계약체결일에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또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으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9

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우선,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앞서 본 법령에서 정한 기간과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인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고지서를 폐기하면 취득세 납부의무가 소멸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담당 공무원이 원고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한 취득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9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5. 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끝.